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7. 3. 26.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수정이유

장학생 선발 시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.

수정주요내용

1. 개정안 제6조 제2항 “②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1:1로 유지되도록 선발하되,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”를 “②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. 다만,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”로 수정 (안 제6조제2항).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. 다만,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도 선발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수	정	안
제6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연간 시·군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수의 <u>7%</u> 로 한다. <u><신 설></u>	제6조(장학생의 정원) ①장학생은 연간 시·군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수의 <u>5퍼센트</u> 로 한다. ②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<u>1:1</u> 로 유지되도록 선발하되,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	제6조 제①항(개정안과 같음)	②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. 다만,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.				